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25페이지

5512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목차

<u>섹션</u>	섹션 제목
A.	정책 기초
B.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의 정의
C.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D.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
E.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보고 절차
F.	괴롭힘 방지 조정자, 괴롭힘 방지 전문가 및 학교 안전팀
G.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의 조사
H.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사건의 대응 조치
I.	보복 또는 양갈음 행위의 금지
J.	근거 없는 비난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
K.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의 발행 및 배포
L.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M.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의 기초 재평가, 사후 재평가 및 검토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2/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 N. 교육 위원회 및 뉴저지주 교육부에 보고하기
- O. 학교 및 교육구의 평가 등급 요건
- P.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기
- Q. 단체 협약 및 개별 계약
- R. 장애 학생
- A. 정책 기초

교육위원회는 학생을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 달성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희롱이나 위협 또는 괴롭힘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이다. 학교의 행정 관리자, 교직원과 자원 봉사자들 중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대하고, 희롱이나 위협 또는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 자는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학생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정책 상에서 "학부모"라는 용어는 N.J.A.C.(뉴저지 행정법) 6A:16-1.3에 의거하여 친부모나 양부모, 법적 후견인, 위탁 부모 또는 대리 부모를 모두 통칭한다.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을 비롯한 친부모 또는 양부모를 의미한다. 단, 친권이 해당 관할 법원에서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의 정의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이란 N.J.S.A.(뉴저지 법전 주석집) 18A:37-14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감정 표현 행위, 서면을 통하거나 언어적/신체적으로 가하는 모든 행동 또는 모든 형태의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행위를 일컬으며,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3/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1.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사건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국적, 성별, 성적 성향, 성별 인식 및 표현, 정신적, 신체적, 감각적 장애와 같은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특성,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2. N.J.S.A. 18A:37-15.3에 명시된 바대로 학교 사유지, 학교 주최 행사, 스쿨 버스,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이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로 다음을 포함한다.
 - a. 해당 상황에서 이성적인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학생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해를 입게 되거나, 학생의 개인 기물이 파손되거나, 피해 학생 본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입게 될 피해나 개인 기물 파손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
 - b. 어떤 학생이나 한 무리의 학생들이 모욕이나 비하를 당하게 되는 경우
 - c. 학생의 교육권을 방해하거나, 심하게 또는 점진적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침으로써 해당 학생의 면학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학교측에서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학교와 관계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예: 학교의 질서 있는 운영이나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이란 전화, 휴대 전화, 컴퓨터 또는 무선 호출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전자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4/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C.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학생 행동 강령에 따라 본인들의 발달 정도, 성숙 정도 및 그동안 표출된 능력에 맞추어 스스로 처신할 것을 기대한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의 권리와 복지가 침해되지는 않는지, 모든 학교 활동에 내재된 교육적 목적이 무엇인지, 학교 시설과 장비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행정 관리자, 자원 봉사자 및 지역 대표자 간 협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학생 행동 표준)을 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 수양을 통해 성숙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먼저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주민들 각자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교육구 및 지역 공공재를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면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위원회는 학생들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양이라고 믿고 있으며, 학생 행동 강령 위반 사안 발생 시 교직원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예측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할 책임을 진다. 학생들을 대하는 교직원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자기 수양을 통한 성장 능력을 배양하도록 고안된 모범 실무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회는 희롱,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음을 포함하여, 학생이라면 응당 갖추어야 하는 자세와 행동 기준에 따른 것임을 기대한다.

1. 학생의 책임(예: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준수, 타인과 타인의 재산 및 권리 존중, 지정된 권위 기관에 대한 복종 및 권위자의 요청에 응대)
2. 바른 행실, 자기 수양 및 올바른 시민성에 대한 긍정적 강화 방향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음
3. 학생의 권리
4. 학생 행동 강령 위반 시 제제 조치와 적법 절차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5/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N.J.S.A. 18A:37-15(a) 및 N.J.A.C. 6A:16-7.1(a)1에 의거하여, 본 교육구에서는 이번 정책 개발 시 학교를 비롯하여 학부모, 학생, 교원, 학생 지원 업무 담당 직원, 학교 행정 관리자 및 자원 봉사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과 각종 종교 단체, 보건 복지 단체, 기업 및 법 집행 기관을 아우르는 지역 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N.J.A.C. 6A:16-7.1(a)2항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수립되어 통과된 뒤 당위원회가 채택한 핵심 윤리 가치를 기반으로 N.J.A.C. 6A:16-7.1에 의거한 학생 행동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학생 행동 지침은 학생들의 발달 연령,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학생들의 과거 불량 행위 이력, 교육구 내 학교별 임무와 체육 시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육구 내 모든 학생들은 본 정책에 따라 교육구에서 제정된 규칙을 준수하고 이러한 규칙 위반 시 그에 따른 적절한 징계 조치와 교정 조치를 따라야 한다.

N.J.A.C. 6A:16-7.1에 따라, 교육감은 매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 행동과 관련된 교육구의 규칙을 알려야 할 책임을 진다. 주 사용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학부모에게 공지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본 교육구에서는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다른 학생들을 지지하는 것이 좋다.

1.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학생
2.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를 건설적으로 막으려는 학생
3.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도와주는 학생
4. 지정된 교직원에게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해 보고하는 학생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6/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D.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 - 학생 대상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저지른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 위원회는 학교 행정 관리자에게 학생 행동 강령에 의거하여 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교정 조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학교 행정 관리자는 학생이 저지른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절한 징계 및 교정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최소한 다음에 열거된 모든 고려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적절한 징계 조치와 교정 조치란 학생 행동 강령과 N.J.A.C. 6A:16-7에 따라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된 것이어야 하고, 위반 행위를 한 학생의 발달 연령과 과거 불량 행위 이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징계 조치 결정 시 고려 사항 - 학생의 입장

1. 문제 행위에 관련된 학생들의 연령, 발달 및 성숙 정도와 교육구와의 관련성
2. 해를 입한 정도
3. 사건 발생 당시 상황
4. 위반 행위의 본질과 심각성
5. 과거 위반 행위 또는 행위의 지속성 여부
6. 관련된 학생들 사이의 관계
7. 발생했다고 알려진 위반 행위의 전후 사정

징계 조치 결정 시 고려 사항 - 교육구의 입장

1. 학교의 문화, 학교의 풍토 및 일반적인 교직원의 학습 환경 관리
2. 사회적, 감정적 및 행동적 지지
3.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관계 및 학생을 대하는 교직원의 태도
4. 가족, 지역 사회 및 이웃의 상태 및 처지
5. 위원회 정책과 규정/절차 준수 여부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7/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정 조치 결정 시 고려 사항

개인적 측면

1. 생활 기술의 부족
2. 사회적 관계
3. 강점
4. 재능
5. 관심사
6. 취미
7. 교과 외 활동
8. 수업 참여도
9. 학업 성취도
10.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및 교육구와의 관련성

환경적 측면

1. 학교의 문화
2. 학교의 풍토
3.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관계 및 학생을 대하는 교직원의 태도
4. 일반적인 교직원의 수업 또는 기타 교육 환경 관리
5. 까다롭거나 자극적인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직원의 능력
6. 사회적, 감정적 및 행동적 지지
7. 사회적 관계
8. 지역 사회 활동
9. 이웃의 상태 및 처지
10. 가족의 상태 및 처지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N.J.A.C. 6A:16-7.1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학생 행동 강령에 설명된 대로 개선 중심(Positive)의 행동 중재부터 정학 또는 퇴학(제적)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다.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위원회가 승인한 학생 행동 강령과 N.J.A.C. 6A:16-7(학생 행동 규범)에 의거하여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차등된 것이어야 하고, 위반 행위를 한 학생의 발달 연령과 과거 불량 행위 이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8/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처벌 중심(Negative)의 징계 조치를 내릴 때에는 교정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처벌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교정 조치는 문제 행동을 바로 잡고,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와 관련되어 문서로 기록된 시스템 차원의 문제 개선도 이러한 교정 조치에 해당한다. 징계 및 교정 조치는 다음 예시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징계 조치 예시

1. 훈계
2. 수업에서 일시적으로 배제
3. 특권 박탈
4. 선생님에 의한 또는 교장(또는 교장이 위임한 자)에 의한 근신
5. 규율 담당 교사에 회부
6. 교내 정학
7. 교외 정학(단기 또는 장기)
8. 법 집행 기관에 신고 또는 기타 법적 조치
9. 퇴학

교정 조치 예시

개인적 측면 - 다른 학생을 괴롭힌 학생

1. 학생과 행동 계약서를 작성한다. 학생이 결과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태도를 바로 잡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학교의 규정과 규칙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학부모를 만나 가족 행동 계약서를 작성한다.
3.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4.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학교 상담 교사, 학교 사회 복지사 또는 심리학자와 면담하여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분석한다(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9/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6. 결과와 달성되는 능력을 포함한 학습 계획을 세운다.
7. 랩 어라운드 지원 서비스(Wrap-around, 해당 학생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및 돌봄 서비스)나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방과 후 지도 서비스를 고려한다.
8. 충동 제어, 분노 관리, 공감대 형성 교육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성 훈련을 제공한다.
9. 가급적 서면으로 된 사과문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0.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반성문을 쓰게 한다.
11. 괴롭힘, 타인에게 공감하기 또는 그와 유사한 주제에 관해 학생이 직접 탐구하게 하고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12. 특히 개인 기물이 파손되었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보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다(보상, 배상, 반환, 상환 등).
13. 연령에 맞는 회복적(치료적, 치유적) 조치에 대해 알아본다.
14. 해당 학생과 추가 점검(Follow-up) 회의 일정을 잡는다.

개인적 측면 - 대상자/피해자

1. 담당 교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학생이 사건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2.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감정적 및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한다.
3. 학교 상담사나 학교 사회 복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피해 학생이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4. 피해 학생에게 향후 자신의 행동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한다.
5. 학생이 괴롭힘에 저항할 수 있는 요령과 전략적 방안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해당 학생과 추가 점검(Follow-up) 회의 일정을 잡는다.

학부모, 가족 및 지역 사회 측면

1. 가족 행동 계약서를 작성한다.
2. 해당 가족이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관에 연계시킨다.
3. 학부모를 대상으로 괴롭힘 및 사회적 감정 교육과 관련된 교육 워크숍을 제공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0/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정 조치 예시 - 환경적 측면(학급,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

1. 괴롭힘 문제와 얽려 사항 파악을 위한 기존 자료 분석
2. 학교 설문 조사 결과의 활용(예: 학교 풍토 설문 조사)
3. 관심 대상 그룹
4. 서신 교환(우편물 및 전자 메일)
5. 케이블 접속 텔레비전
6. 학교 문화의 변화
7. 학교 풍토 개선
8. "문제 발생 주요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예: 라커룸, 복도, 운동장, 구내 식당, 학교 주변, 통학 버스)
9. 증거 기반의 체계적인 괴롭힘 방지 조치 및 프로그램 채택
10.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예방 및 개입 요령과 전략적 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
11. 관련 교직원을 위한 전문성 개발 계획 마련
12. 교육 프로그램 및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해 학부모와 다른 지역 주민 및 단체[예: 학부모-교사 연합회(PTA), 학부모-교사 조직(PTO)] 참여
13. 괴롭힘 문제 처리를 위해 전문적인 학습 모임 운영
14. 소규모 또는 대규모 프레젠테이션 진행: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행동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측면에서 학생의 행동에 따른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 조치를 다룸
15. 학교 정책 및 절차 개정
16. 일정 조절
17. 복도 통행량 조절
18. 학습 과정 및 친사회적(Pro-social) 단체와 사람들과의 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사례 탐구 및 적용
19. 학생의 등하교 경로 또는 패턴 변경
20. 등하교 시를 포함한 방과 후 피해 학생에 대한 감독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1/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21. 선정된 특정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예: 복도, 구내 식당, 라커룸, 운동장, 학교 주변, 통학 버스)
22. 특정 선생님의 도움 활용
23. 문제 행위에 가담한 교직원에 대해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
24. N.J.A.C. 6A:16-8에 따라 개입 및 연계 서비스팀에의 참여를 포함한 지원 단체 차원의 개입
25. 학부모 회의
26. 가족 상담
27. 일반적인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대응 계획 마련
28. 학생 및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행동 기준 알리기
29.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문제 해결 시 전체 학생들의 참여
30. 학생 행동 위원회 또는 학생 윤리 위원회의 권고 사항
31. 동료(동년배) 지지 그룹에 참여하기
32. 전학
33. 교내 상근 경찰, 청소년 선도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관의 관여 또는 기타 적법한 법적 조치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 - 성인 대상

본 교육구에서는 학생을 희롱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저지른 성인에게도 적절한 징계 및 교정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징계 조치로는 구두 또는 서면 문책, 임금 상승 동결, 법적 조치, 정직 등의 징계 조치, 퇴직 및/또는 업무 수행 금지, 교육구 주최 프로그램 참여 금지 또는 교내 건물이나 학교 부지 내 접근 금지가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정 조치로는 교내 상담 또는 외부 상담,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및 근무 환경 변경이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상자/피해자 지원

교육구에서는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혜택과 리소스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2/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피해 학생이 느끼는 안전 수준에 따라 제공해야 할 지원의 종류, 다양성, 지원 장소 및 범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평화로운 환경에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어떠한 위협을 받지 않고 든든한 지원 속에서 안전하게 공부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생님의 도움
2. 복도 및 운동장 모니터링
3. 학교 리더와 파트너 맺게 하기
4. 성인 멘토와 연결시켜 주기
5. "눈에 띄지 않게" 학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인 배정
6. 교실 내 자리 배정 변경
7. 시간표 변경
8. 전학
9. 방과 전후 감독
10. 등하교 시 감독
11. 상담
12. 치료 또는 테라피

E.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보고 절차

교육 위원회에서는 각 학교에서 본 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 교직원, 자원 봉사자 및 학생들과 접촉하는 서비스 계약 업체 직원들은 본 정책을 위반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은 경우, 당일에 교장 또는 교장이 위임한 자에게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 교직원, 자원 봉사자 및 학생들과 접촉하는 서비스 계약 업체 직원들은 구두로 보고한 시점으로부터 등교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장은 발생했다고 하는 사건에 관련된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상황에 따라 상담 가능 여부와 기타 개입 서비스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 교장은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받은 시점에 사건 관련자 모두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3/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학생, 학부모 및 방문자는 본 정책을 위반한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은 경우, 당일에 교장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학생, 학부모 및 방문자는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히는 행위를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단, 익명 보고만으로는 학생 행동 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정식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를 즉각적으로 보고한 위원이나 교직원은 보고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소송 사유 대상에서 면제된다.

N.J.S.A. 18A:37-18의 조항에 따라, 피해자는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민법 및 형법 모두 포함)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가 어떠한 불법 행위 책임도 새롭게 지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

본 교육구에서는 표준 보고서 양식 및/또는 웹 기반 보고 시스템을 포함하여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의 동원을 고려할 수 있다. 본 교육구에서는 익명 보고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교내 장소에 잠금 장치를 한 신고함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구 소속 직원으로부터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보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 또는 수행하지 못하거나,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문제 발생을 인지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불상사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학교 행정 관리자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F. 괴롭힘 방지 조정자, 괴롭힘 방지 전문가 및 학교 안전팀

1. 교육구 소속 괴롭힘 방지 조정자는 교육감이 지명해야 한다. 교육감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해당 교육구 소속 직원을 조정자로 임명해야 한다.

교육구 소속 괴롭힘 방지 조정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4/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 a.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을 예방, 파악 및 처리하기 위한 교육구 제정 정책의 조율 및 강화
 - b. 해당 교육구 내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 교육 위원회 및 교육감과 협업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의 예방, 파악 및 처리
 - c. 교육감과 협의 하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
 - d.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된 기타 업무 수행
 - e.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와 한 학년도마다 최소 2회 면담하여 교육구 내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을 예방, 파악 및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에 대한 논의 및 강화
2. 각 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의 괴롭힘 방지 전문가를 지정해야 한다. 괴롭힘 방지 전문가는 진학지도 상담 교사, 학교 심리학자 또는 현재 학교에 고용된 교직원 중 괴롭힘 방지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 교직원이어야 한다.

학교 괴롭힘 방지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a. N.J.S.A. 18A:37-21에 명시된 바대로 학교 안전팀의 의장 담당
- b. 교내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 조사 주관
- c. 교내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 예방, 파악 및 처리를 책임지는 일차 학교 담당자의 역할 수행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5/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3. 교육구에 소재한 각 학교마다 학교 안전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 안전팀의 구성 목적은 지속적인 체계적 운영 절차와 교육 실습에 주력함으로써 긍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 발전 및 유지하고, 학교 풍토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등과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 각 학교 안전팀은 최소 한 학년도마다 2회 모임을 가져야 한다. 학교 안전팀은 교장 또는 교장이 위임한 자(가능한 교내 선임 행정 관리자가 되어야 함) 및 교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자로는 학교 선생님, 학교 괴롭힘 방지 전문가, 학교 소속 학생의 학부모와 기타 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한 자가 해당된다.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는 학교 안전팀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

학교 안전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a. 희롱, 위협 및 괴롭힘과 관련되어 교장에게 보고된 모든 신고 내용 기록 접수
- b.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의 조사 후 작성된 모든 보고서의 사본 접수
- c. 교내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의 파악 및 처리
- d.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학교 정책과 학교 풍토의 검토 및 강화
- e. 학생, 선생님, 행정 관리 직원,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 실시
- f. N.J.S.A. 18A:37-13 이하 조항에 따른 필수 교육 및 교장이나 교육구 소속 괴롭힘 방지 조정자의 요청에 따른 기타 교육에 참석 (학교 안전팀은 성공적인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접근법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사례를 다루는 전문성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6/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 g. 교장 또는 교육구 소속 괴롭힘 방지 조정자가 요청한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과 관련된 기타 업무 수행

N.J.S.A. 18A:37-2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팀에 소속된 학부모는 상기 제3조 a항,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팀 활동이나 학생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도 참가하면 안 된다. 이는 가족 교육권과 개인정보 보호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20 U.S.C. Section 1232 및 34 CFR Part 99), N.J.A.C. 6A:32-7(학생 기록부) 및 N.J.A.C. 6A:14-2.9(학생 기록부)의 요건을 최소한도로 충족한 것이다.

G.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의 조사

위원회는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사하는 상황을 묘사한 폭력 및 불평 사항 신고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철저하고 완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장 또는 교장이 위임한 자는 이러한 사건의 구두 보고 시점부터 등교일 기준으로 1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조사 담당자는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이며, 이 담당자는 교장과 협의의 통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교장은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가 아닌 다른 직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조사를 돕도록 할 수 있다.

조사는 개시되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장에게 서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해당 사건의 서면 보고일로부터 등교일 기준으로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10일이 경과된 후 보고가 끝난 사건 및 조사와 관련한 정보가 새롭게 입수된 경우,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는 해당 사건 정보와 이력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출 완료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

교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행동 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장은 조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등교일 기준으로 2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s Act)(N.J.S.A. 52:14B-1 이하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7/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학생 행동 강령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한 후,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입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상담을 지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학교 풍토 강화를 지시하거나, 징계를 내리거나, 적절한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교육감은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교육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보고 시점은 조사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예정된 정기 회의일 이전이어야 한다. 교육감의 보고서에는 학생 행동 강령에 의거한 징계 내용, 제공된 서비스, 계획된 교육 또는 교육감이 직접 취했거나 권고한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연방법과 주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조사의 본질, 교육구의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의 증거 확보 여부 및 징계 실행 여부 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제공된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교육 위원회에 조사 결과가 보고된 후부터 등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조사 결과를 받은 후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는 개최 요청일로부터 등교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교육 위원회는 관련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적회의 공개법(Open Public Meetings Act)(N.J.S.A. 10:4-1 이하 조항)에 의거하여 임원 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징계 또는 제공 서비스 권고 사항 및 기타 이러한 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의 증언을 듣고 이들이 제출한 정보를 검토한 뒤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8/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육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또는 임원 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예정된 정기 회의에서 제출된 교육감의 결정을 재확인하거나, 반려하거나, 수정한 결정 사안을 서면 문서로 발행해야 한다. N.J.A.C. 6A:3(논쟁 및 분쟁)에 의거하여 교육 위원회의 결정이 발행된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사건이 "차별 방지법"(Law Against Discrimination) P.L.1945, c.169(C.10:5-1 이하 조항)에 명시된 보호 대상 집단의 속하는 자의 특성으로 인해 유발된 경우, 학부모, 학생 또는 단체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무부의 민권 사무국(Civil Rights Divi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H.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사건의 대응 조치

위원회는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장과 괴롭힘 방지 전문가는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이러한 대응 조치를 상황에 맞게 취해야 한다. 교육감은 확인된 희롱,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해 본 정책에 명시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교직원이 취해야 하는 대응 조치 중 하나로 상담, 지원 서비스, 개입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의 적절한 구성 및 배정을 들 수 있다. 일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행위는 학교 담당자 선에서 가해 학생 개인별로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 단독 사건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거나, 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사건의 일부로 파악되어 학급 차원, 학교 차원, 교육구 차원이나 법 집행관의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담당자는 모든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일차적으로 해당 행위를 저지른 학생 개인에게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인된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는 각 사안별로 확인된 바에 따라 개인 차원, 학급 차원, 학교 차원 또는 교육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경우별로 취해야 할 대응 조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19/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1. 개인 차원의 대응: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둔 개선 중심의 행동 중재(예: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단기 상담, 생활 기술 그룹)를 일관되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2. 학급 차원의 대응: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사건에 대한 학급 토론, 역할극(학생 사정이나 관여 정도에 따른 민감도 반영), 탐구 프로젝트,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시청각 자료 감상 후 토론, 정중함, 관용, 자기 주장 표현 및 의견 충돌 관리 능력 함양 교육 등이 포함된다.
3. 학교 차원의 대응: 테마의 날, 방과 후 과외 활동, "선행" 프로그램 또는 선행상, 학생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수립, 사회 규범 홍보, 포스터, 공공 서비스 안내, "자연적 원조자"(Natural helper, 문제의 유무와 관계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는 동료 리더십 프로그램, "대응자"(Upstander) 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전자 및 무선 통신 장치 안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예방 교육 과정 또는 캠페인 등이 포함된다.
4. 교육구 차원의 대응: 학교 전체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 풍토 강화, 정책 검토 및 개발에 지역 사회의 참여 유도, 해당 지역 소재 단체(예: 정신 건강 상담소, 보건 단체, 보건 시설, 법 집행 기관, 종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제공,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예방 캠페인 전개 등이 포함된다.

I. 보복 또는 앙갚음 행위의 금지

위원회는 소속 위원, 교직원, 학생들과 접촉하는 서비스 계약 업체 직원, 자원 봉사자 또는 학생이 피해자, 증인,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자, 사건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알고 있거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복하거나 앙갚음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보복이나 앙갚음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는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20/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판례법인 연방법 및 주법의 법규 및 규정과 교육구의 정책 및 절차에 의거하여 행정 관리자가 해당 행위의 본질, 심각도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보복이나 양갈음으로 의심되는 모든 행위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사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진다.

보복이나 양갈음을 한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및 교정 조치의 예시는 본 정책의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 항목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교직원 또는 학생들과 접촉하는 서비스 계약 업체 직원이 보복이나 양갈음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 예시로는 구두 또는 서면 문책, 임금 상승 동결, 법적 조치, 정직 등의 징계 조치, 퇴직 및/또는 업무 수행 금지, 교육구 주최 프로그램 참여 금지 또는 교내 건물이나 학교 부지 내 접근 금지가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정 조치로는 교내 상담 또는 외부 상담,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및 근무 환경 변경이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이 보복이나 양갈음을 한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 예시로는 문책, 법적 조치 및 법규 또는 행정 조례에 의거한 기타 조치를 들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정 조치로는 상담 및 전문성 개발 교육이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J. 근거 없는 비난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

위원회는 보복이나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1. 학생 - 보복이나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는 N.J.S.A. 18A:37-1 이하 조항(학생에 대한 징계)에 의거하고, N.J.A.C. 6A:16-7.2(단기 정학), N.J.A.C. 6A:16-7(장기 정학), N.J.A.C. 6A:16-7.5(퇴학) 및 본 정책의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에 기술된 바에 따라 개선 중심의 행동 중재부터 정학 또는 퇴학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시행될 수 있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21/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2. 교직원 - 교직원 또는 학생들과 접촉하는 서비스 계약 업체 직원이 보복이나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 및 적절한 교정 조치는 교육구의 정책, 절차 및 협약에 의하여 문책, 정직, 임금 상승 동결, 퇴직 및/또는 업무 수행 금지, 교육구 주최 프로그램 참여 금지 또는 교내 건물이나 학교 부지 내 접근 금지가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정 조치로는 교내 상담 또는 외부 상담,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및 근무 환경 변경이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방문객 및 자원 봉사자 - 방문객 및 자원 봉사자가 보복이나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 학교 행정 관리자가 사안의 본질, 심각도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한 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내 건물이나 학교 부지 이용권 박탈, 학생과의 접촉이나 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교정 조치로는 교내 상담 또는 외부 상담,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및 근무 환경 변경이 해당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K.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의 발행 및 배포

교육감은 모든 교직원, 학생들과 접촉하는 모든 서비스 계약 업체 직원, 자원 봉사자, 학생 및 해당 교육구 소속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 정책을 매년 배포한다. 이때 N.J.S.A. 18A:37-14에 따라 학교 사유지, 학교 주최 행사, 스쿨(통학) 버스 및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된 모든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행위에 적용된다는 안내문도 함께 배포된다.

교육감은 학생 편람(핸드북)과 교육구의 모든 출간물에 본 정책에 대한 안내문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출간물에는 교육구 소재 학교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규정, 절차 및 표준에 대한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22/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육감은 교육구의 웹 사이트 첫 페이지에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되, 찾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교육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러한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이 교육구 웹 사이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교육감은 교육구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교육구 소속 괴롭힘 방지 조정자의 성명, 학교 전화 번호, 학교 주소 및 학교 전자 메일 주소를 게재해야 한다. 각 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괴롭힘 방지 전문가와 교육구 소속 괴롭힘 방지 조정자의 성명, 학교 전화 번호, 주소 및 학교 전자 메일 주소를 게재해야 한다.

L.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교육감과 교장은 기존 교직원 및 신입 교직원(행정 관리자, 교원, 학생 지원 서비스 직원, 행정/사무 지원 직원, 통학 담당 직원, 급식 서비스 직원, 시설/유지관리 직원, 서비스 계약 업체 직원, 학생과 상당한 시간 접촉하는 자원 봉사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 교육구의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는 N.J.S.A. 18A:37-14에 명시된 보호(약자) 집단 및 차별,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특성에 기초한 괴롭힘 방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공립 학교 선생님과 전문 교육인은 N.J.S.A. 18A:37-22의 d항에 따라 전문성 개발의 일환으로 전문성 개발 기간 단위인 매 5년마다 최소 2시간 동안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시간의 자살 방지 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자살 방지 교육에는 자살 위험 및 희롱, 위협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내용과 자살할 위험이 높은 그룹에 속하는 학생의 자살 위험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23/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새롭게 뽑히거나 지명된 위원회 소속 위원은 N.J.S.A. 18A:12-33에 따라 첫 임기의 첫 해 동안 희롱,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구에서는 일반적인 학사 일정 동안 괴롭힘 방지 조정자와 각 학교 소속 괴롭힘 방지 전문가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 리더(School leader, 교육구 소속 직원으로, 수석 행정 관리자, 교장 또는 감독관이어야 함)는 N.J.S.A. 18A:26-8.2에 따라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된 학교 리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구에서는 매년 10월의 첫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Week of Respect"(존중의 주)를 감독해야 한다.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 N.J.S.A. 18A:37-14에 정의된 바에 따라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예방에 초점을 둔 연령별 지침을 전달하고 관찰한다. 교육구는 한 학년도 기간 동안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예방에 대한 연령별 지침을 핵심 교과 과정 내용 표준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대로 제공한다. 이는 N.J.S.A. 18A:37-29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교육구와 교육구에 소재한 각 학교는 매년 교직원, 학생, 행정 관리자, 자원 봉사자, 학부모, 법 집행 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또는 접근 방법 및 기타 선도 과제를 추진하고, 실행하고, 문서화하고 평가한다. 프로그램 또는 접근 방법 및 기타 선도 과제는 N.J.S.A. 18A:37-17 이하 조항에 따라 희롱, 위협 및 괴롭힘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학교 수준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M.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의 기초 재평가, 사후 재평가 및 검토

교육감은 교육구의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에 대해 학생들과 매년 논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24/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교육감과 교장은 매년 괴롭힘 방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의 기초 재평가, 사후 재평가 및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후 평가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경우, 본 정책은 물론,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및 접근 방법의 개정과 신규 정책 추가를 권고해야 한다.

N. 교육 위원회 및 뉴저지주 교육부에 보고하기

교육감은 N.J.S.A. 18A:17-46의 조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모든 폭력 행위, 시설물 훼손 행위(반달리즘),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횟수는 매 학년도마다 2회(9월 1일 ~ 1월 1일, 1월 1일 6월 30일)이며, 이전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상기 행위가 보고 대상이다. N.J.S.A. 18A:17-46의 조항에 따라 관련 정보도 뉴저지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O. 학교 및 교육구의 평가 등급 요건

각 학교와 각 교육구는 N.J.S.A. 18A:37-13 이하 조항을 준수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기울인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등급을 산정받아야 한다. 학교와 교육구가 받은 등급은 N.J.S.A. 18A:17-46의 조항에 따라 학교 웹 사이트와 교육구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교육감이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도 교육구 웹 사이트에서 게재되어야 한다. 학교와 교육구에 각각 지정된 평가 등급은 이들 기관에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웹 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

P.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기

일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행위는 편견과 관련된 사건이거나 편견 범죄일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거나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일부인 경우, "교육 기관 및 법 집행 기관 간 협정서"(Memorandum of Agreement Between Education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교직원이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책 안내서

학생
5512/ 25/25페이지
희롱, 위협 및 괴롭힘

Q. 단체 협약 및 개별 계약

N.J.S.A. 18A:37-13.1 이하 어떤 조항도 괴롭힘 방지 권리 장전 법안(Anti-Bullying Bill of Rights Act)의 발효일(2011년 1월 5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단체 협약 또는 개별 채용 계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N.J.S.A. 18A:37-30.

교육 위원회는 범죄 이력 확인 결과 편견에 근거한 위협 범죄를 저질렀거나 편견에 근거한 위협 범죄를 모의 또는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 자를 교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계약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R. 장애 학생

N.J.S.A. 18A:37-13.1 이하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징계 조치나 일반/특수 교육 서비스 및 지원과 관련된 장애 학생의 권리가 축소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다. N.J.S.A. 18A:37-32.

향후 희롱, 위협 및 괴롭힘 정책이 개정될 경우, 교육구는 모든 수정 사항을 위원회에서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임 카운티(군)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N.J.S.A. 18A:37-13 ~ 18A:37-32

N.J.A.C. 6A:16-7.1 이하 조항, 6A:16-7.9 이하 조항

학교 사유지, 학교 주최 행사, 스쿨 버스에서의 희롱, 위협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지침 - 2011년 4월 - 뉴저지주 교육부

제안서 - 뉴저지주 교육국장 - 괴롭힘 방지 권리 장전 법안의 교내 이행을 위한
지침 - 2011년 12월 16일

채택일: 2011년 8월 30일

개정일: 2013년 6월 18일

개정일: 2013년 11월 19일

